



##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②



2016.11.21 | 김영석\_전국건설기업노조 정책국 수석부국장

필자는 지난 1편의 사례에 노동조합원으로서 현장에 자리한 이해당사자 주체이다. 법학전공자로서 필자가 배운 법적 공정성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회사가 어떤 개인의 소유물처럼 취급되는 것을 목도하며,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고른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해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본 보고서 2편에서는 그 고민의 결과들이 제언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미 해당 제언들을 단체협약이나 정관에 포함시키려 노력해 보았지만 기업 측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구조조정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대부분 희생을 하고 있는 사이 개인이 자신의 사익만을 취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이러한 부분을 노사 수준의 협의로 해결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공적 시스템이 개입하여 법제도를 통해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필자의 취지가 담겨있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새사연은 ‘현장보고서’ 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새사연 소모임 <빛쟁이 포럼>의 참여자인 김영석님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중견기업 삼부토건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다룬 본 보고서는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연재될 예정입니다.

지난 1편에서 '해방이후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산업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던 한 기업의 부실화 과정'을 필자의 실제적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난 70년간 산업화를 통해 시장자본주의를 발달시킨 주체세력들의 끔찍한 부패 고리와 국정 농단은 계속되고 있다. 한 기업권력의 부실화는 그에 속한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들만의 불행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권력의 부실화는 전체 국민의 뼈아픈 고통과 불행을 야기하고, 결국에는 민주주의 역사마저 무너뜨려 사회경제적 대 혼란까지 야기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이 혼란을 극복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권력의 민주적 통제권을 통해 독점적 강자들에 지배당하는 시장자본주의의 폐단들을 하나 둘씩 수정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적 이상과 과제들이 자본주의에 의해 파괴되지 않을 것이며, 자본주의 또한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헬조선'이 곧 '통제받지 않는 시장자본주의'이다

대중의 참여와 저항을 통해 이룩해 온 정치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게 만든 강자 독식의 극단적 시장자본주의체제는 반드시 변화해야만 한다. 현재의 비민주적 재벌중심 자본주의 체제는 기업 및 금융에 대한 통제권을 소수집단이 사유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 체제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이해관계를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시장 메커니즘', 즉 '보이지 않은 손'이라는 주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착한 자본주의만을 추구해 나간다면, 기업은 1인에게 사유화되어 부당한 권력에 농락당하거나 소수의 사익만을 위해 운영되기 마련이다. 더불어 힘도 권한도 없는 서민들은 자본주의에 근본적으로 내재된 구조적 갑을관계에 종속되어, 결국 구조조정이나 부실의 책임만 왕창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이면서도 가만히 앉아 자본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한 행태는 착한 제왕의 덕치나 왕도만을 기대하며 살았던 조선시대와 다를 바 없다.

민주적으로 통제받지 않고서 자본가에게 보다 많은 자유와 자율을 주고 있는 자본주의는 결국 봉건시대의 전제적 군주정치나 마찬가지다. 그 권력의 횡포와 억압들은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예컨대 몇 년 전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회장아들은 정년을 몇 년 앞둔 50대 사장들에게 업무상 잘못에 대한 체벌로서 걸핏하면 벽을 보고 손들고 서있게 했는데, 이렇게 참담한 모습들은 오늘날 '통제받지 않는 자본주의의 실상'을 민낯으로 보여준다.

이제 국가권력은 '시장자율'과 같이 세상을 미혹하는 말로서 방관적 자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대신에 개별 경제주체들 간의 조화와 균형, 그리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자율적으로는 결코 공정하고 평등하게 기능하지 않는다. '민주적 통제권을 지닌 국가권력'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완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과 인간에 대한 가치들이 존중될 수 있으며, 성장과 발전에 대한 혜택 또한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경제민주화'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기업과 금융 구석구석에 파리를 틀고 있는 자유방임적 시장중심의 '봉건적 사고'들을 걷어내야 한다. 기업의 일방적 통제권을 지배주주 개인이 독점하지 않게 하며, 실질적 기업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골고루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경영자, 주주, 종업원, 채권자, 협력업체, 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권한과 이윤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이나 금융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와 우리가 바라는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재벌과 주주중심의 자본주의'에서 '민주적인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재벌과 주주만을 위주로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해 낼 권능이 없다.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이 민주적 원칙에 따라 기업경영이나 이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계층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노동자 서민들에게 좀 더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산업화를 통해 성장한 기업들의 종업원들은 이제 '기업의 미래성장을 좌우하는 핵심적 자본'이 되었고, 종업원들의 지식과 기술을 축적해서 이를 기업경영에 잘 반영하는 회사가 소위 '잘나가는 기업'이 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현상이다. 한 마디로 오늘날 '수평적 리더십'은 이상이 아닌 현실적 조건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종업원을 기업경영이나 이사회 구성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종업원들이 직접 선출한 노동자대표는 기업운영에 직접 참여해 회사의 경영과 발전에 기여할 충분한 자질과 책임이 있다. 대부분의 지배대주주 사용자들이 입만 열면 <회사가 없으면 노동자는 없다>고 하는데, 그러한 말은 언필칭 회사가 곧 '지배대주주'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지배대주주인 사용자와 회사는 동일하지 않다. 특히 오늘날 상장된 대기업은 주주와 노동자, 그리고 여러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공동운명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지배대주주 1인을 '기업주'라 칭하며 황제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도 오늘날 대규모 회사의 사회 공동체적 기능을 생각해 보면 시대착오적인 패배한 생각일 뿐이다. 단지, 회사의 실질적 구성원들이 영위한 사업실적에 따라 '주주'로서 적절한 배당을 받고, 주주총회에 부여된 권리만 행사하면 된다.

실제 대기업들의 생산적 자산에 투자되는 자금을 보면 '주주들을 모집하여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극히 일부이며,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기여하여 축적한 사내유보자산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회사의 주요한 통제권한을 주주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특히 '소규모의 개인기업'이 아닌 '시장에 공개된 중대형 기업들'은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지배주주의 지분이 적고, '기업을 영위하는 목적' 또한 '주주들의 단기적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 계획에 의한 안정적인 성장'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 전체의 사회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는 기업은 결국 이해당사자들 간의 '비협력'과 '사리사욕', '종업원 사기저하'로 인한 생산성 감소 등으로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이어지다 보면 마침내는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는 결과까지 초래해, 시장에서 고사될 가능성이 크다. 또 자율협약,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등의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간 기업의 경우에는 '채권단의 이자유예나 감면', '출자전환이나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의 통제권을 다시 그대로 기존 지배주주들에게 돌려 줄 이유가 없다.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기업을 운영해 나가고, 추가적인 자본이 필요하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출자자를 모집하면 된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다. 구조조정에 성공하여 다시 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출자자 또한 그 잠재성을 보고 자본을 투자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현재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야기하고 있는 '재벌과 주주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적인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된다.

## 독점적 기업지배권 해체 방안

이해당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하여 기업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에 대한 '주주권'과 '경영권'을 분리해서 인식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기업의 일정한 수익을 배분받고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인 주주권'과 '기업운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그들의 협력과 통합을 바탕으로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경영권'은 마땅히 분리되어야 한다.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한'과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경영권'은 다른 것이며, 상장된 대기업일수록 이를 엄격히 구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만 지배주주 1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기업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주주 등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기업운영의 통제권을 위임받은 경영권자'는 단지 '대주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들을 조화시킴으로써, 기업에게 부여된 사회 경제적 기능을 다하게 하여 노동자에게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안정적 성장을 이루게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지배 대주주가 마음먹은 대로 경영권을 독단적으로 전횡할 수 있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지배구조의 세습과정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경영자 선택의 풀'은 직계혈족에게만 제한될 것이다. 이는 무능하고 부실한 경영을 초래해 사회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의 권익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기업가 정신을 보유한 경영인이 선임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된다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좀 더 검토해 보자. 첫째로, 현행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구성권'을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당사자들 또한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현행 상법은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을 보완하기 위한 특례조항'을 두어 '사외이사를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1/4이상이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외이사의 선임과정을 보면 대주주의 입맛에 맞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사외이사들'이 주주총회에서 그대로 선임되며,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또한 '대주주의 하수인'인 이사들로 구성되기 일쑤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라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상장회사에서 특별히 투자자나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정'임에도 기업투명성이나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위해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꼭두각시가 되고 또 대표이사는 기업총수의 꼭두각시가 되는 구조는 지배주주가 기업을 사유화하는 근본적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그 시급한 개선책으로 '종업원 대표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종업원 대표 등에게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만 주주권을 남용하는 '기업총수의 부당한 사익추구'나 '불필요한 자사주 매입과 같은 비생산적투자', 그리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극히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기업의 행태들'이 줄어들 수 있다.

둘째,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도 고려해 볼만하다. 현행 상법은 임의적 기관으로 집행임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거의 없어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대기업의 이사회 구성원들은 업무집행과 업무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본인들이 수행한 것을 스스로 감시하고 의결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 상장회사나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은 의무적으로 집행임원제도를 설치하고, 이사회는 집행임원을 선출해 그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러한 집행임원제도가 의무화된다면 전문경영인들이 양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기업경영의 생산성과 투명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셋째, '지배주주 및 소유경영이사'의 '감사 추천 및 선임권'은 특별히 배제되어야 한다. 주주총회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지배주주가 동일한 기관에서 자신을 감시 감독하는 꼭두각시 감사를 추천하여 선임한다. 이렇게 뽑힌 감사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직무집행, 불법행위 등을 전혀 감사하지 못하며, 대신 회사 규정에도 없는 종업원들의 직무만 감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이사회'를 위해 애꿎은 종업원들만 감시하는 꼴이다. 현행 상법은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주주총회에서 회사내부 지배구조에 무관심한 소액주주들이 단결하여 경영지배권을 견제할 감사를 선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단기적이고 투기적 성격이 강한 소수주주권을 참여시키고 이를 강화하는 입법'보다는 '기업의 종업원대표, 채권자대표, 공익적 소비자단체 등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과 같이 '자산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상근감사를 두게 하고', '자산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다.'고 해도, 그 선임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지배주주와 기타 주주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들'이 감사를 선임한다면 그 선임된 그 감사가 '기업경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넷째,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 상장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기업과 관련된 배임, 횡령 등의 범죄로 인해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그 지위를 상실하며,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 임원 재선임을 금지하는 상법상의 특례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지배주주가 관련범죄행위로 주주권까지 임의로 제한받는다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하



겠지만 처음 언급한 주주권과 경영권 즉 기업통제권이 분리된 지배구조가 정착된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대기업의 총수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우리 경제가 위축된다.' '느니, '기업경영이 어렵게 된다.'느니 하면서 유전무죄를 부추기고 건전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들은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민주적 강행규정의 도입 전이라도 '자율적 정관개정'을 통해 민주적 기업지배 권력구조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혜택과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민주적 지배권력구조를 채택한 기업이라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한 가치를 드높일 뿐만 아니라, 재벌 지배주주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곧 '경제주체들 간의 조화에 기여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그런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금융상의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아울러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앞장서는 기업이라면 국가가 더욱 지원하고 성장시켜 노동자 서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그 주주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업구조조정 실질적 과제

'상장회사 및 대기업의 부실화'는 그 이해당사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일부 부실화된 대기업'은 정부가 제멋대로 재벌의 기득권을 위해 원샷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 또한 '힘없는 대부분의 부실한 중견기업들'은 채권단에게 지배주주의 시한부 지배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회사를 약탈금융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고 만다. 기업은 시장의 수요를 잘못 예측하여 과잉투자를 하거나 한계기업인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언제든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적절한 금융이나 국가의 지원을 통해 조기에 정상화시켜야 한다. 또 '산업환경의 변화로 일정한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도 적절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 등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정책당국에게 부여된 마땅한 책임과 의무이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지배주주들의 독점적 기업통제권 해체방안'이 법제도적으로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 부실화된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나 사회가 금융이나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그 기업이 '국민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지 '주주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보전해 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실징후' 대상으로 사회 경제적 배려와 특별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채권자나 기존주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사회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굳이 노동권을 지키려는 노동조합이 투쟁조끼에 머리띠를 조아 매고 투쟁하기 전이라도, 당연히 '노동자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부실징후를 나타내는 기업이나 한계기업들'의 시의적절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부실 경영의 책임 당사자의 경영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실효적인 통제수단이 필요하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이나 '채권단과의 재무개선약정을 통한 자율협약'은 구조조정에 대한 권한을 채권금융기관과 기존 지배주주에 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주주의 보유주식은 질권<sup>1)</sup>을 설정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지만, 실제 기존 대주주가 여전히 기업경영을 전횡하기 일쑤다. 노동조합에게는 '구조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쟁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서까지 요구한다. 금융기관 채권자를 제외한 다른 협력업자들의 채권 또한 소외되기 쉽다. 그러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이를 이용해 아무런 민주적인 절차나 과정도 없이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횡포는 특별히 근절되어야 한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한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상법상의 일방적인 경영권 보호'나 '채권자들만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그런 짓들을 자행하는 것은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피해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기업 정상화에 장애가 될 뿐이다. 산업차원이나 기업차원의 구조조정 단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민주적인 합의과정'이다. 그런 합의를 위한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체가 구성되고, '서로 간의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합의안'에 따라 '기업의 통제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들이 조율되고 그 수용된 결과에 따라 기업이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다.

'기업매각' 또한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상화를 위한 기업매각'이나 '정상화된 후의 기업매각'이나, 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간 기업은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공공성을 지닌 사회적 자본'들이 투여된다. 그렇다면 그 기업은 일개의 자본, 혹은 개인에게 통째로 다시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기업의 매각은 엄밀히 말하면 '그 기업의 지배주주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지배주주는 자신의 주주권을 기업의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

1)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민법 329~355조). 담보 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이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만큼의 기업통제권을 행사하면 된다. 앞서 '상장회사나 대기업이 주주만이 아니라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사회 경제적 목적에 걸맞게 주주의 기업통제권이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사회 경제적 구제를 통해 '자본의 사회화'라는 구조조정과정을 거친 기업의 '경영통제권'은 더더욱 '노동자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과 합의'를 토대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기업매각시장에서 '고질적인 투기자본의 인수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투기자본의 기업인수합병은 불공정한 기업지배구조에 원천적으로 기인한다. 기업의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이 회사의 중장기적 미래와 사회경제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라면, 단지 '주주들의 사적 이윤극대화'의 도구로만 간주하는 '떡튀성 투기자본'은 발 디딜 틈이 없게 된다. '사모펀드'나 '투기적 산업자본'이니 하면서 인수경쟁에서 그들을 굳이 제외시킬 필요도 없게 되며, 오로지 기업은 그 투자된 일정한 자본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화시켜 시장에서 건전한 기업 활동을 수행하면 된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광장의 하늘높이 쏘아올린 함성은 '자본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덕치'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경영참여와 일정한 기업통제권 행사로 메아리쳐 돌아와야 한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은 '민주적 자본주의'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사회 경제적 민주화'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조조정'은 부실화된 기업을 시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청산하고 존속시키고 매각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단편화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기업이나 관련 산업이 부실화된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단기적인 탐욕'이나 '기업 내지는 금융내부 조직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방식'을 개선하는 문제로 보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봉건적 제왕이 군림하는 시장 자본주의의 비민주적 행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상적 기업이라도 자본세습의 과정에서 언제든지 '삼부토건의 부실화'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부실화되어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은 '그 동안 축적해 온 영업자산과 기술능력을 보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희망'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각자도생'의 삶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삼부토건의 자율협약체결 및 연장, 기업회생절차 신청과정'은 반드시 정경유착의 관계를 되짚어서 그 부조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정책당국과 기업들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정' 역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국정을 농단한 권력실세들과의 관련성까지 밝혀진다면, 지금 막 해고통지를 받아 든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은 과연 무엇으로 닦아줄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실현가능한 곳에서부터 기업의 통제권을 이해당사자들에게 민주적으로 분산하여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합리적인 구조조정정책'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전이 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단의 무리들의 상상을 초월한 국정농단으로 인해 유례없는 헌정마비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비참한 정치 사회적 현실들은 갑자기 생겨난 일들이 아니다. 1945년 해방된 이후로도 줄곧 혁명되지 않고 우리 삶을 억압해 온 구체제의 사회 경제적 모순들이 한꺼번에 그 허울을 벗고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을 뿐이다. '근현대화'니 '산업화'니 하며 스스로 자찬해 왔던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적 파탄은 그간 숨겨온 사회 경제적 모순들이 현실정치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 '필연적 산물'이다. 70년간 지속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공화국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 만큼 후진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징표이다. 역설적이지만 이번 사태와 혼란은 국민주권의 당사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다시 민주적 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노동자 대중들은 절망으로 '자포자기'하느니 보다는 '희망의 배를 띄우고 다시 힘차게 노를 저어 나갈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물론 필자는 그 뱃길에 '노동자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의 권능과 책임이 포함된 민주적 자본주의'를 실었으면 좋겠다. 🐼



##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11월 21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연구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 불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 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전 연령' 의 문제다	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황서연 진남영
주거	4/4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염탐하기	황서연 진남영
사회적경제	4/11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황서연 진남영
경제	4/29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정승일
청년	5/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최정은
청년	5/19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강세진
노동	6/14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송민정
청년	6/20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	새사연 노동연구팀
사회	7/4	가계경제, 2009년 경제위기와 닮았다	최정은
청년	7/22	나는 생활하는가, 생존하는가?	새사연 노동연구팀
청년	8/16	홀가분한 후퇴, 반쪽짜리 지방생활	송민정
주거	8/23	영국 임차인관리조직의 혁신사례 : 런던 브라우닝 EMA(Estate Management Association)	황서연
사회	8/29	비영리단체의 정의 (Defining NPIs)	강세진
복지	9/5	줘어짜는 재정, 개인 부담 늘고 복지 후퇴	최정은
경제	9/12	가계부채, 현재 부실화 막을 방안 세 가지	송종운
경제	9/19	[한국 경제동향①] 장기불황, 양극화, 낙수효과 소멸	김선태
경제	10/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① 대한민국 불평등 시작의 원년, 1995년	정승일
경제	10/21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②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정승일
사회적경제	10/24	마을에서 읽는 관계 줄거리	강세진
노동	10/31	여성노동자 임금실태조사	새사연 노동연구팀
경제	1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③ '한류 드라마' 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주의	정승일
경제	11/7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①	김영석
경제	11/11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④ '돈이 돈 버는' 재테크 자본주의	정승일
복지	11/14	시민이 스스로 하는 복지, 스웨덴의 시민봉사단체(Frivilligcentraler)	최정은
경제	11/18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⑤ 재산소득, 상위 1%가 '씩씩이'	정승일
경제	11/21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②	김영석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